
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자료

2024. 12.

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금 융 지 원 실

목 차

| | |
|--|----|
| I. 정책자금 일반 | 1 |
| 1. 개요 | 2 |
| 2. 제출서류 | 5 |
| 3. 지원대상 | 10 |
| 4. 지원내용 | 14 |
| 5. 문의처 | 16 |
| II. 정책자금 상세내역 | 20 |
| 1. 일반경영안정자금 [일반자금] | 21 |
| 2. 특별경영안정자금 | 23 |
| 2-1. 긴급경영안정자금 [재해피해, 일시적경영애로 소상공인] | 23 |
| 2-2. 청년고용연계자금 | 28 |
| 2-3. 대환대출 | 31 |
| 3. 성장기반자금 [소공인특화자금] | 35 |
| 붙임1.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| 37 |
| 붙임2. 지역경제 위기지역 대상 확인 | 39 |
| 붙임3. 정책자금 상환방법 | 41 |

I. 정책자금 일반

1.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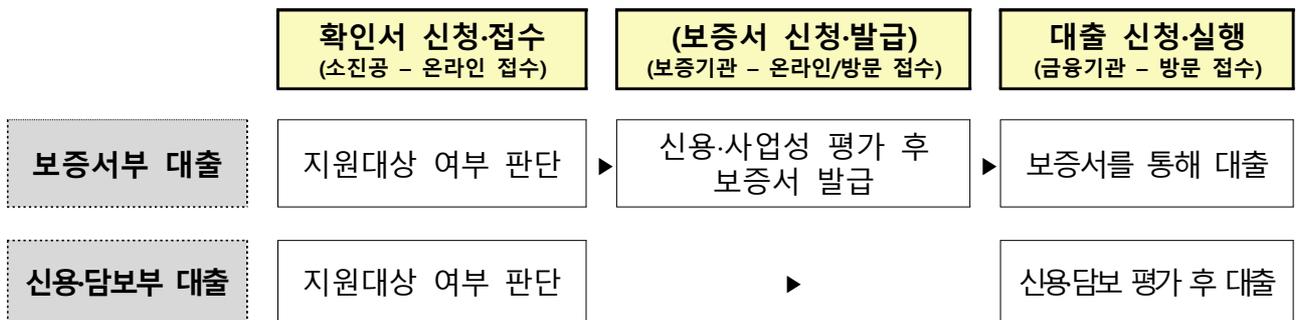
【 목 적 】

- 본 지침은 「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규정」 제4조 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(이하 '정책자금') 중, 대리대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,
- 정책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지침 해석의 명확화를 통해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추진하고자 함
 - * 해당 사안별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등을 추가할 수 있음
- 대리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, 관계 법령 및 고시,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, 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규정, 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에 따름
- 본 지침에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'공단') 금융지원실의 해석에 따름

□ 정책자금 운용목적

-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용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

□ 지원절차



○ 신청·접수
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서 신청·접수

* 필요 시 취급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 할 수 있음

- (대표자 본인 신청·접수) 소상공인 정책자금(대리대출)은 대출신청서 본인서명 필수, 실명확인증표 확인 후 개인 NCB를 조회하므로 대리인 접수 지양
-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
 - *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대출불가(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)
- 유효기간은 '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' 발급일로부터 60일*(확인서 우측상단 표기)
 - * 단, '24년 10월 25일 이후 발급된 확인서는 '24년 12월 24일(화)까지 유효
- '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'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

○ 채권확보 : 신용보증서, 순수신용, 물적담보

- (신용보증서) 보증기관(지역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)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 발급
- (순수신용, 부동산 등 물적담보)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

○ 대출실행(18개 금융기관)

- 경남, 광주, 국민, 기업, 농협, 부산, 산림조합중앙회, 산업, 새마을 금고, 수협, 신한, 신한중앙회, 아이엠(舊. 대구), 우리, 전북, 제주, 하나, 한국스탠다드차타드

□ “여성기업”의 활동 촉진

- 「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여성기업법)」 제4조(차별적 관행의 시정) 이 법에 의해 “여성기업”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금지해야 하며 시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함

□ '착한 임대인' 정책자금 지원

- (지원대상) '20.1~'24.12월 기간, 소상공인 임차인*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**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***인 임대인

*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(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)

- ** ① '임대료 인하기간(월) ×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(%) ≥ 10 수준 또는
 ② 지자체 개별 착한 임대인 기준(재산세 감면 등)을 만족하는 경우

(예) '20년 4월~6월 3개월 동안 임대료 인하, 월평균 임대료 100만원 → 90만원 이하
 = 3(월) x 10(%) = 30 으로 지원대상

***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 : 매출 30억원 이하,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

- (지원시기) '20.12월초~'24.12월까지 한시 지원

- (지원자금) 일반경영안정자금(일반자금)

- 착한 임대인 확인절차

- 소상공인 해당 여부 :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 절차 준용
- 임차인 해당 여부 : 가족관계증명서로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
- 착한임대인 확인절차 : 아래의 절차(서류) 중 하나로 확인

| 구분 | 확인 서류 또는 절차 |
|--|--|
| ① 재산세 감면 대상자 | -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시·군·구에서 발급한 그와 유사한 서류 |
| ② 무상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| - 관할 지방중기청을 통해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확인 |
| ③ '착한 임대인' 증서 소지자 | - 지자체의 장이 수여한 '착한 임대인 증서' 일체 |
| ④ 소진공 지역센터 직접 확인 (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) | -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-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-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- 임대료 인하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또는 확약서<양식8>,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- 세금계산서,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필요시) |

2. 제출서류

□ 공통서류

① 대출신청 작성 서류(각 1부)

-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<양식1>
-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<양식2>
- 개인(신용)·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·활용 동의서<양식3>
-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<양식5>

② 실명확인증표

- *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노인복지카드, 장애인복지카드, 여권, 외국인등록증 (외국인)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(최근 1개월 이내)

- * 최근 1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 가능. 단,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휴폐업 여부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 확인

④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(최근 1개월 이내)

- (상시근로자 없는 경우)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

- * 대표자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,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경우, 타인(배우자 등)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등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해당
- * 보험자격득실확인서 : 개인별 전체내역(과거이력 포함 체크)

< 기초생활수급자·국가유공자·의사상자 대체 서류(상시근로자 없는 경우) >

1. 기초생활수급자 :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2. 국가유공자 : 아래의 ①, ② 서류 모두 제출
 - ① 국가유공자카드(또는 국가보훈등록증) 또는 유족카드
 -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
3. 의사상자 : 아래의 ①, ② 서류 모두 제출
 - ① 의사상자(증서) 또는 유족카드
 -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
4.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
 - ① 의료급여증명서

- * 단,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,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

- (상시근로자 있는 경우) 건강보험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또는 내역),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,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,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,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

- * 상시근로자 수 확인은 '건강보험' 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, 제출이 어려운 경우,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
- *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: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
- *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에 이중 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※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

- 1)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,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
 -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
- 2)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,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 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
 -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(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)
- 3)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
 -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
- 4)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
 -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(상시근로자 존재시, '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', 상시근로자 미존재시, '보험자격득실확인서' 제출)

⑤ 매출액 확인서류

-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- * 단,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, 카드(현금영수증) 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
- *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,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 가능
- *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“소상공인확인서”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

⑥ (필요시)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(최근 1년간)

- (구비대상)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- * (예) 하나의 기업이 도소매업(상시근로자 5인미만)과 제조업(상시근로자 10인미만)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,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7인일 경우 →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하여 주된 사업이 제조업일 경우 신청가능

- (구비서류)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, 부가가치세신고서, 사업장 현황신고서 중 택1

* 상기 연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, 매출원장, 세금계산서, 납품 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 및 주업종 영업 사실확인서<양식6>로 확인 가능

▶ 주된 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은 “[붙임2] 업종구분 방법” 참조

⑦ (필요시)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

- (구비서류) 사업장임대차계약서,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

*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

**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, 전대차계약서 (임대인 동의 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) 또는 별도의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수집
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지원시설 또는 공유 주방, 공유오피스 등에 입주한 기업은 전대차동의서 수집을 생략할 수 있음)

□ 추가서류

| 자금구분 | | 준비서류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|--|----|---|------------|---|
|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| | ① 장애인복지카드(또는 장애인증명서) 또는 국가유공자(또는 국가보훈등록증) 카드 ② (공동사업체의 경우) : 장애인기업확인서 | | | | | | |
| 긴급 경영 안정 자금 | 재해 피해 | ① 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증(지자체) ② 보증기관(지역신보) 징구서류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보증심사 시 징구서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공통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분증 ■ 임대차계약서(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인 경우) 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(사업장 자가인 경우) ■ 금융거래확인서 ■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(해당 시) ※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- 사업자등록증명, 매출액확인 서류(부가세과세표준증명, 표준재무제표 등), 국세·지방세 납부증명 </td> </tr> <tr> <td>추가 (법인)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■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| | 공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분증 ■ 임대차계약서(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인 경우) 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(사업장 자가인 경우) ■ 금융거래확인서 ■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(해당 시) ※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- 사업자등록증명, 매출액확인 서류(부가세과세표준증명, 표준재무제표 등), 국세·지방세 납부증명 | 추가 (법인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■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|
| | 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| | | | | | | |
| 공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분증 ■ 임대차계약서(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인 경우) 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(사업장 자가인 경우) ■ 금융거래확인서 ■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(해당 시) ※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- 사업자등록증명, 매출액확인 서류(부가세과세표준증명, 표준재무제표 등), 국세·지방세 납부증명 | | | | | | | |
| 추가 (법인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■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| | | | | | | |
| 일시적 경영 애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출감소 미확인 : (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)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• 매출감소 피해확인 :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·체크카드 (현금영수증) 매출자료 | | | | | | | |
| 청년고용연계 자금 | | ① (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)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최근 1개월 이내) ② ('24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)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<양식7> | | | | | | |

□ 우대서류(해당시)

| 자금구분 | 준비서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일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청년고용연계 |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제로페이 가맹 확인(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) 여성기업확인서 사본(유효기간 내)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(유효기간 내)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, 컨설팅 협약서(3년 이내)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(공제기간 내)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(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) (월납 : 대출신청 전월까지, 분기납 : 전분기까지 납입)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(교육)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|

□ 서류 수집기준

- 신청서류 수집기준은 직접대출 조사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준용

<참고> 제출서류 발급처

| 구분 | 서류명 | 발급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사업자 확인서류 | 사업자등록증 사본 | 세무서, 국세청 홈텍스(www.hometax.go.kr) |
| | 사업자등록증명 | |
|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| 보험자격득실확인서 |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 |
| | 소상공인확인서 |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smba.go.kr) |
| | 건강보험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(또는 현황) |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 |
| |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|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(total.comwel.or.kr) |
| |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산재) | |
| |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| 세무대리인(직인필), 국세청 홈텍스(www.hometax.go.kr) |
| | 의료급여증명서 |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|
|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| 국가보훈처 |
| 국가유공자(또는 국가보훈등록증) 카드, 유족카드 | | |
| 연구전담 요원확인 |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|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.koita.or.kr (www.rnd.or.kr) |
| 매출액 확인서류 | 표준재무제표증명 | 세무서, 국세청 홈텍스(www.hometax.go.kr) |
| |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| |
| | 부가가치세신고서 | |
| | 사업장현황신고서 | |
| 거래실적 확인 | 매출·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| 세무대리인(직인필), 국세청 홈텍스(www.hometax.go.kr) |
| | 매출·매입세금계산서 | 세무대리인(직인필), 국세청 홈텍스(www.hometax.go.kr) |
| 풍수해 보험가입 | 보험가입증권 | DB손해보험, 현대해상화재보험, 삼 성화재보험, KB손해보험, NH농협손 해보험, 메리츠화재, 중소기업중앙회 |
| 여성 기업 | 여성기업확인서 | 공공구매종합정보 (https://www.smpp.go.kr) |
| 장애인 기업 | 장애인기업확인서 | |
| 자영업자 고용보험 |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|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(total.comwel.or.kr) |
| | 자영업자고용보험 완납증명서 | |
| 전통시장 화재공제 | 전통시장화재공제 가입확인서 | 전통시장화재공제 (https://fma.semas.or.kr) |
| 노란우산 공제 |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(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) | 노란우산 (www.8899.or.kr) |
|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|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| 한국산업단지공단 (www.factoryon.go.kr) |
| 은행권 컨설팅 |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(교육)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| 경남, 광주, 국민, 기업, 농협, 부산, 수협, 신한, 아이엠(舊. 대구), 우리, 전북, 제주, 하나, 한국스탠다드차타드 |

3. 지원대상

< 소상공인 확인기준[붙임1] >

①연평균매출액 + ②월평균 상시근로자수

□ 다음 사항(가~라)을 모두 만족해야 함

가. 소상공인 기준(연평균매출액 + 상시근로자수)을 만족하는 자

* 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서 소상공인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¹⁾에 해당하는 자

① (연평균매출액)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『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』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[붙임1의 별첨1]

-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

* 단,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(2023~2024)은 용자신청서(연매출액)로 대체(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)

▶ 평균매출액 등 확인방법은 “[붙임1] 소상공인 확인 기준” 참고

② (상시근로자수) 주된 사업*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

*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(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, 제7조)
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, 「장애인기업지원자금」에 한하여 ‘장애인기업확인서’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

▶ 상시 근로자 수 확인방법은 “[붙임1] 소상공인 확인 기준” 참고

1)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,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

-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

※ 상시근로자 (법적) 기준 (『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』 제3조제3항)

- ‘근로기준법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
 1. 임원* 및 ‘소득세법 시행령’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
 - * 법인의 대표이사, 등기임원 및 감사(사외이사 제외), 개인기업 대표, 무급 가족 종사자 등
 2.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
 3.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*의 연구전담요원
 - * ‘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
 - **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·오프라인 발행)와 연구개발 인력현황(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) 제출받아 확인
 4. 단시간근로자*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(所定)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
 - * 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

나.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
- *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‘사업개시년월일’ 이후 사업자
 - ▶ 사업체의 대표자(공동대표 포함)만 신청가능
- *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장 휴·폐업 중인 경우 신청불가
- *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(예 : 어린이집 등)

다.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
- 제외업종 : 유흥 향락 업종, 전문 업종 등

- *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
 - ▶ “[붙임2] 업종구분 방법”, “[붙임3]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” 참조

라. 비영리 개인사업자·법인·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

- * 『중소기업기본법』상 ‘기업’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.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(비영리사회적기업, 어린이집, 장기요양 등)
- * (유의)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(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)

<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>

| 구분 | 사업 | 코드 | 내용 | 정책자금 |
|-----------|--|---|--|----------------|
| 고유 번호증 | 개인 및 단체 | - |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인자 1.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| (비영리) 신청불가 |
| | | 사업자등 등록증 (①②③ - ④⑤ - ⑥⑦⑧⑨⑩) | 개인 | 01~79 |
| 80 |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 이외의 자 (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) | | | (비영리) 신청불가 |
| 89 |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| | | (비영리) 신청불가 |
| 90~99 | 개인면세사업자 | | (영리) 신청가능 | |
| 법인 | 81,86, 87,88 | | 영리법인의 본점 | (영리) 신청가능 |
| | 82 | |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(법인격이 없는 사단, 재단,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) | (비영리) 신청불가* |
| | 83 | 국가, 지자체, 지자체 조합 | (비영리) 신청불가* | |
| | 84 | 외국법인의 본·지점 및 연락사무소 | (영리) 신청불가 | |
| | | 85 | 영리법인의 지점 | (영리) 신청불가 |

* 비영리법인이 '사회적기업' 인증을 받은 경우, 대출신청 가능

【 영리 기준 】

- ① 영리 개인사업자
 - 일반사업자 :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
 -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: 정책적으로 보호,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
- ② 영리법인 :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
 - '상법'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·유한회사·합명회사·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
 - '중소기업기본법'(제2조제4항)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'중소기업협동조합법'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·단체 등을 중소기업자(소상공인)로 할 수 있다.
 - 영농조합법인 : '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' 제28조 및 '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' 제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·유통·가공·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어업회사법인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'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제16조 및 제1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음.

【 비영리 기준 】

*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·법인·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 제외

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

-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, 영유아플라자 등
-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(요양원, 방문요양서비스, 주·야간보호서비스 등)은 비영리사업에 해당
- '민법'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·학교법인·의료법인·사회복지법인·재단법인
 - ※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.
 - ☞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·재단법인
 - ☞ 「사립학교법」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, 학술·종교·자선·기예·사교·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(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으로 하고 주주·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
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.
 - ☞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 - * 비영리법인이 '예비사회적기업' 지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함
 - ☞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(연합회), 사회적협동조합(연합회)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 - ☞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(연합회)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 - ☞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(연합회),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
② 교회 등 종교단체

- '민법'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, 교회운동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

③ 비영리특별법인(한국은행, 단위농협, 새마을금고 등)

4. 지원내용

□ 대출한도 : 소상공인정책자금(직대, 대리)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

* 재해자금은 대출한도(5억원)와 별도로 운용

○ 동일관계기업*에 대해서는 직접대출 대출한도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준용

* 관계기업 :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또는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기업 (개인기업 포함)

□ 대출금리 :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

*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“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”를 활용하고 있음

○ 금리우대는 유형별 0.1%p, 최대 0.3%p 지원되며,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

<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>

| 유형 | 구분 |
|-------|--|
| 정책 우대 | -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, 직접대출 성실상환, 제로페이 가맹점 |
| 정책 배려 | -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기업 |
| 사회안전망 | - 자영업자 고용보험, 전통시장 화재공제, 풍수해보험, 노란우산공제 |

* 고정금리(장애인기업지원자금,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, 대환대출) 상품 제외

□ 대출기간 : 5년 이내 (거치기간 2년 포함)

*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

□ 상환방식

○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%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, 30%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

*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
【 일시회수 유보 】

①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·폐업 소상공인은 일시회수 유보

-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,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(관련근거 : ‘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, 중기청 기업금융과-724, 2009.6.23)

☞ (예)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 까지 일시 회수 유보

② 자금신청 당시 영리 개인사업자·법인·단체·조합(사업자등록증)이 상환기간 중 공적원인(정책목적)에 의해 비영리(고유번호증)로 전환될 경우 일시회수 유보

- 단, 정상상환 중에 한하며, 개인사유로 인한 변경시 불인정

☞ (예) 국세청이 요양관련 사업을 ‘13년 이후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영리(고유번호증)로 변경

□ 자금용도 :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

| 구분 | 세부내용 |
|----|---|
| 운전 |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|
| 시설 | 생산설비,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, 사업장 건축 및 확보 자금(매입, 경·공매) 등 |

5. 문의처

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

| 지역본부 및 센터 | 전화(FAX) | 주소 | 관할구역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서울지역본부 | (02)730-9361 |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| 서울특별시 |
| (서울)서울중부센터 | (02)720-4711 (02)730-9360 |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| 중구, 종로구, 서대문구, 은평구 |
| (서울)서울동부센터 | (02)2215-0981 (02)2215-0984 |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| 광진구, 성동구, 강동구, 동대문구 |
| (서울)서울서부센터 | (02)839-8321 (02)839-8730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| 강서구, 양천구, 영등포구 |
| (서울)서울남부센터 | (02)585-8622 (02)585-8626 |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|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 |
| (서울)서울북부센터 | (02)990-9101 (02)990-9104 |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| 강북구, 성북구, 노원구, 도봉구, 중랑구 |
| (서울)관악센터 | (02)889-9262 (02)889-9270 |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|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 |
| (서울)동작센터 | (02)3482-6686 (02)3482-6687 |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| 동작구, 용산구, 마포구 |
|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| (051)469-4680 |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|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 |
| (부산)부산중부센터 | (051)469-1644 (051)469-3286 |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| 중구, 영도구, 서구, 사하구, 동구 |
| (부산)부산북부센터 | (051)341-8052 (051)342-8175 | 부산광역시 북구 기차로12 이수타워 9층 | 북구, 사상구, 강서구 |
| (부산)부산남부센터 | (051)633-6562 (051)633-0675 |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| 부산진구, 연제구, 동래구, 금정구 |
| (부산)부산동부센터 | (051)761-2561 (051)761-2564 |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 46SMC 빌딩 6층 | 남구, 수영구, 해운대구, 기장군 |
| (울산)울산남부센터 | (052)260-6388 (052)260-2472 |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| 남구, 울주군 |
| (울산)울산북부센터 | (052)243-7489 (052)243-7495 |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문해거리 28 2층 | 북구, 중구, 동구 |
| (경남)창원센터 | (055)275-3261 (055)275-3264 |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| 창원시(구 마산시, 진해시), 창녕군, 함안군 |
| (경남)진주센터 | (055)758-6701 (055)758-7102 | 경상남도 진주시 총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| 진주시, 사천시, 산청군, 의령군, 남해군, 하동군, 거창군, 함양군, 합천군 |
| (경남)김해센터 | (055)323-4960 (055)323-4963 |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| 김해시 |
| (경남)통영센터 | (055)648-2107 (055)648-2109 |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(한려지점) 3층 | 통영시, 거제시, 고성군 |
| (경남)양산센터 | (055)367-7112 (055)367-7116 |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| 양산시, 밀양시 |
| 대구경북지역본부 | (053)629-4633 |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(동산동지점) 3층 | 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|
| (대구)대구남부센터 | (053)629-4200 (053)628-4314 |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(동산동지점) 3층 | 서구, 중구, 남구, 수성구 |
| (대구)대구북부센터 | (053)341-1500 (053)341-3900 |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| 북구, 동구, 군위군 |
| (대구)대구서부센터 | (053)639-3404 (053)639-3411 |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| 달서구, 달성군 |
| (경북)안동센터 | (054)854-3281 (054)854-3284 |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| 안동시, 상주시, 의성군, 청송군, 영양군, |

| 지역본부 및 센터 | 전화(FAX) | 주소 | 관할구역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(경북)구미센터 | (054)475-5682 (054)475-5681 |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-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| 구미시, 김천시, 성주군, 칠곡군, 고령군, |
| (경북)포항센터 | (054)231-4363 (054)231-4364 |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| 포항시, 영덕군, 울진군, 울릉군 |
| (경북)경주센터 | (054)776-8343 (054)776-8346 |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7-2 경주상공회의소 2층 | 경주시, 경산시, 영천시, 청도군 |
| (경북)영주센터 | (054)634-6975 (054)634-6980 |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7 영주공유플랫폼 3층 | 영주시, 문경시, 봉화군, 예천군 |
| 광주호남지역본부 | (062)369-8754 |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| 광주광역시, 전라도, 제주도 |
| (광주)광주남부센터 | (062)366-2122 (062)366-2136 |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| 서구, 남구 |
| (광주)광주서부센터 | (062)954-2084 (062)954-2085 |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| 광산구 |
| (광주)광주북부센터 | (062)525-2724 (062)525-2726 |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| 동구, 북구 |
| (전남)목포센터 | (061)285-6347 (061)285-6349 |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| 목포시, 무안군, 해남군, 강진군, 영암군, 장흥군, 신안군, 완도군, 진도군 |
| (전남)순천센터 | (061)741-4153 (061)741-4159 |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| 순천시, 광양시, 구례군, 보성군, 고흥군, 곡성군 |
| (전남)여수센터 | (061)665-3600 (061)665-3607 |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-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| 여수시 |
| (전남)나주센터 | (061)332-5302 (061)332-5309 |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| 나주시, 화순군, 함평군, 영광군, 장성군, 담양군 |
| (제주)제주센터 | (064)751-2101 (064)751-2103 |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| 제주시 |
| (제주)서귀포센터 | (064)739-9216 (064)739-9218 |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0 KT신서귀포빌딩 1층 | 서귀포시 |
| (전북)전주센터 | (063)231-8110 (063)231-8112 |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| 전주시, 완주군, 진안군, 무주군 |
| (전북)익산센터 | (063)853-4411 (063)853-4413 |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| 익산시 |
| (전북)정읍센터 | (063)533-1781 (063)533-1783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| 정읍시, 김제시, 고창군, 부안군 |
| (전북)남원센터 | (063)626-0371 (063)626-0372 |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| 남원시, 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 |
| (전북)군산센터 | (063)445-6317 (063)466-0199 | 전북 군산시 대학로 600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3층 | 군산시 |
| 경기남부지역본부 | (031)204-3014 |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| 경기남부 |
| (경기)수원센터 | (031)244-5161 (031)244-5123 |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| 수원시 |
| (경기)평택센터 | (031)666-0260 (031)666-0270 |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| 평택시 |
| (경기)화성센터 | (031)8015-5301 (031)8015-5304 |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| 화성시, 오산시 |
| (경기)성남센터 | (031)705-7341 (031)707-7345 |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| 성남시 |
| (경기)안양센터 | (031)383-1002 (031)383-0550 |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| 안양시, 군포시, 의왕시, 과천시 |
| (경기)안산센터 | (031)482-2590 (031)482-2593 |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| 안산시 |
| (경기)하남센터 | (031)794-4383 (031)794-4390 |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| 하남시, 광주시, 양평군 |
| (경기)용인센터 | (031)337-1830 (031)337-1838 |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| 용인시 |
| (경기)안성센터 | (031)677-6192 (031)677-6188 |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1~203호 | 안성시 |

| 지역본부 및 센터 | 전화(FAX) | 주소 | 관할구역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경기)이천센터 | (031)631-7455 (031)631-7465 |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| 이천시, 여주시 |
|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| (032)822-2619 (032)822-2620 |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713호 | 인천광역시, 경기북부 |
| (인천)인천남부센터 | (032)437-3570 (032)437-3574 |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| 연수구, 미추홀구, 남동구, 중구, 동구, 옹진군 |
| (인천)인천북부센터 | (032)514-4010 (032)514-4014 |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| 부평구, 계양구, 서구, 강화군 |
| (경기)광명센터 | (02)2066-6348 (02)2066-6347 |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| 광명시 |
| (경기)의정부센터 | (031)876-4384 (031)876-4386 |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| 의정부시, 동두천시, 포천시, 양주시, 연천군 |
| (경기)부천센터 | (032)655-0381 (032)655-0383 |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| 부천시 |
| (경기)고양센터 | (031)925-4266 (031)925-4269 |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| 고양시, 파주시 |
| (경기)구리센터 | (031)554-5361 (031)554-5370 |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빌딩 502호 | 구리시, 남양주시, 가평군 |
| (경기)김포센터 | (031)997-4302 (031)997-4305 |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9 원정빌딩 4층 | 김포시 |
| (경기)시흥센터 | (031)311-2689 (031)311-2690 | 경기도 시흥시 은계로 347 다운프라자 403호 | 시흥시 |
| 대전충청지역본부 | (042)864-1609 |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9층 |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시, 충청남도, 충청북도 |
| (대전)대전북부센터 | (042)864-1602 (042)864-1606 |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, 102호 | 유성구, 서구, 대덕구 |
| (대전)대전남부센터 | (042)223-5301 (042)223-0665 |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 | 중구, 동구 |
| (세종)세종센터 | (044)868-4524 (044)868-4527 |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| 세종시 |
| (충남)천안센터 | (041)567-5302 (041)567-5308 |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| 천안시 |
| (충남)공주센터 | (041)852-1183 (041)852-1186 |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| 공주시, 홍성군, 청양군 |
| (충남)논산센터 | (041)733-5064 (041)733-5067 |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464 논산타워 2층 203-2호 | 논산시, 계룡시, 금산군 |
| (충남)서산센터 | (041)663-4981 (041)663-4980 |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2동 2층 | 서산시, 당진시, 태안군 |
| (충남)아산센터 | (041)549-5392 (041)549-5399 |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202호 | 아산시, 예산군 |
| (충북)청주센터 | (043)234-1095 (043)234-1091 |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| 청주시 |
| (충북)충주센터 | (043)854-3616 (043)854-3619 |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| 충주시 |
| (충북)제천센터 | (043)652-1781 (043)652-1784 |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| 제천시, 단양군 |
| (충북)음성센터 | (043)873-1811 (043)873-1814 |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| 음성군, 괴산군, 증평군, 진천군 |
| (충북)옥천센터 | (043)731-0924 (043)731-0926 |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| 옥천군, 보은군, 영동군 |
| (충남)보령센터 | (041)931-4443 (041)931-4448 | 충청남도 보령시 흥덕로 22, 2층 | 보령시, 서천군, 부여군 |
| 강원지역본부 | (033)243-1950 |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| 강원특별자치도 |
| (강원)강릉센터 | (033)645-1950 (033)645-3695 |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| 강릉시, 평창군 |
| (강원)원주센터 | (033)746-1950 (033)746-1990 |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3층 306호 | 원주시, 횡성군, 영월군 |
| (강원)삼척센터 | (033)575-1950 (033)575-1953 |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| 삼척시, 동해시, 태백시, 정선군 |
| (강원)속초센터 | (033)638-1950 (033)638-1951 | 강원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| 속초시, 양양군, 고성군, 인제군 |

□ 신용보증서 발급기관

- 지역신용보증재단(1588-7365) 신용보증기금(1588-6565) 기술보증기금(1544-1120)

<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>

| 재단명 | 전화번호 | 홈페이지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강원재단 | (033) 260-0001 | www.gwsinbo.or.kr |
| 경기재단 | 1577-5900 | www.gcgf.or.kr |
| 경남재단 | 1644-2900 | www.gnsinbo.or.kr |
| 경북재단 | 1588-7679 | www.gbsinbo.co.kr |
| 광주재단 | (062) 950-0000 | www.gjsinbo.co.kr |
| 대구재단 | (053) 560-6300 | www.ttg.co.kr |
| 대전재단 | (042) 380-3800 | www.sinbo.or.kr |
| 부산재단 | (051) 860-6600 | www.busansinbo.or.kr |
| 서울재단 | 1577-6119 | www.seoulshinbo.co.kr |
| 세종재단 | (044) 865-0550 | www.sjsinbo.or.kr |
| 울산재단 | (052) 289-2300 | www.ulsanshinbo.co.kr |
| 인천재단 | 1577-3790 | www.icsinbo.or.kr |
| 전남재단 | (061) 729-0600 | www.jnsinbo.or.kr |
| 전북재단 | (063) 230-3333 | www.jbcredit.co.kr |
| 제주재단 | (064) 750-4800 | www.jcgf.or.kr |
| 충남재단 | (041) 530-3800 | www.cnsinbo.co.kr |
| 충북재단 | (043) 249-5700 | www.cbsinbo.or.kr |
| 중앙회 | 1588-7365 | www.koreg.or.kr |

Ⅱ. 정책자금 상세내역

1. 일반경영안정자금 (일반자금)

□ 지원대상 : 업력 무관 소상공인

* 용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(표준산업분류 68)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은 '착한 임대인'에 한하여 '일반자금' 신청가능

□ 용자조건

○ 대출한도 : 동일기업(개인, 법인) 당 최고 7천만원

○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 (분기별 변동금리)

- 금리우대는 유형별 0.1%p, 최대 0.3%p 지원되며,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(착한 임대인의 경우, 우대금리 지원 제외)

| 유형 | 구분 |
|-------|--|
| 정책 우대 | -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, 직접대출 성실상환, 제로페이 가맹점 |
| 정책 배려 | -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기업 |
| 사회안전망 | - 자영업자 고용보험, 전통시장 화재공제, 풍수해보험, 노란우산공제 |

* (소진공 컨설팅)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

** (은행권 컨설팅) 신청일 기준 3년전 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(3시간 이상)수료일 이내

*** (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)

① (성실상환 기준)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

✓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

✓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,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

② (제외대상) 사고기업, 자율상환제 대출계좌, 손실보상선지급 계좌, 완제된 계좌

○ 대출기간 : 5년 (거치기간 2년 포함)

□ 자금코드명

| 자금명 | 자금코드 | 자금설명 |
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일반경영 | B0 | - 우대금리 미지원 |
| 일반경영_우대1 | BZ | - 우대금리 0.1%p |
| 일반경영_우대2 | BY | - 우대금리 0.2%p |
| 일반경영_우대3 | BX | - 우대금리 0.3%p |

□ 준비서류

| 구분 | 준비 서류 |
|---------------|--|
| 공통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실명확인증표(운전면허증, 노인복지카드, 장애인복지카드, 여권 등)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 이내)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(최근 1개월 이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: 보험자격득실확인서(개인별, 과거이력 포함)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-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: 건강보험 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또는 내역),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,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산재),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: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, 카드(현금영수증)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*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“소상공인확인서”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(필요시*)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(최근 1년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, 부가가치세신고서,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*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(필요시*)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장임대차계약서,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*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,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|
| 금리우대 (해당시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(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)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(유효기간 내)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(유효기간 내)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, 컨설팅 협약서(3년 이내)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(공제기간 내) ⑨ 소기업·소상공人公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(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) (월납 : 대출신청 전월까지, 분기납 : 전분기까지 납입) ⑩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(교육)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|

2. 특별경영안정자금

2-1 긴급경영안정자금

1 재해피해 소상공인

□ 지원대상

- (재해피해) 집중호우, 태풍, 폭설,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, 지자체에서 “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
 - *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

□ 용자조건

- 대출한도 : 동일기업(개인, 법인) 당 최고 1억원
 -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
 - * 관련근거 :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1조(지원방식 및 한도) ④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용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.
- 대출금리 : 연 2.0% (고정금리)
- 대출기간 : 5년 (거치기간 2년 포함)
 - * 피해규모 등 정책방향에 따른, 조건 변동 시 별도 안내문에 따름

□ 자금코드명 : (긴급경영_재해피해) B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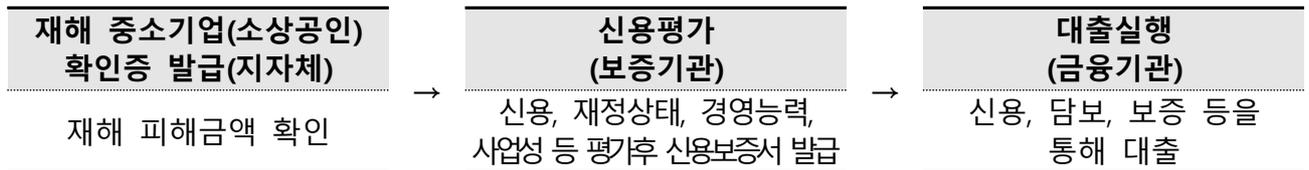
- * (긴급경영_특별재난) 용자조건은 재난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확정(안)에 별도 따름

□ 준비서류

| 구분 | 준비 서류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|----|---|------------|
| 공통 | ① 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(지자체 발급) | | | | | |
| | ② 보증기관(지역신보) 징구서류 | | | | | |
|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증심사 시 징구서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통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분증 ■ 임대차계약서(사업장 및 거주주택, 임차인 경우) 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(사업장 자가인 경우) ■ 금융거래확인서 ■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(해당 시) ※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: 사업자등록증명, 매출액확인서류(부가세과세표준증명, 표준재무제표증명 등),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가 (법인)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■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| | 공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분증 ■ 임대차계약서(사업장 및 거주주택, 임차인 경우) 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(사업장 자가인 경우) ■ 금융거래확인서 ■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(해당 시) ※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: 사업자등록증명, 매출액확인서류(부가세과세표준증명, 표준재무제표증명 등),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| 추가 (법인) |
| 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| | | | | | |
| 공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분증 ■ 임대차계약서(사업장 및 거주주택, 임차인 경우) 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(사업장 자가인 경우) ■ 금융거래확인서 ■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(해당 시) ※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: 사업자등록증명, 매출액확인서류(부가세과세표준증명, 표준재무제표증명 등),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| | | | | |
| 추가 (법인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■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| | | | | |
| *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| | | | | | |

□ 진행절차

- 용자방식 :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확인 및 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 발급 후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(대리대출)을 통해 대출



- * 순수신용,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
- * 신용보증서 발급 : 지역신용보증재단(☎1588-7365)

2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(마감)

□ 지원대상 :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

○ (매출감소 확인 예외)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

- ① 고용위기지역·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③ 상권활성화구역·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

○ (매출감소 확인) 다음의 경영애로 사유로 매출감소 피해 소상공인

- (경영애로 사유) ①~⑤ 중 1개 이상 해당
 - ① 감염병 확산*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
* 예시 : 조류 인플루엔자(AI), 구제역, 아프리카돼지열병 등
 -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·면·동에 소재한 소상공인
 - ③ 상권활성화구역·자율상권구역 인접 읍·면·동에 소재한 소상공인
* 인접 읍·면·동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구 상위 행정구역인 시·군·구로 판단
 - ④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
 -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
- (매출감소 피해) 직전 매출이 직전전 매출(연도, 반기, 분기, 월별)과 비교하여 10% 이상 감소

| 구분 | 비교시점 | 확인자료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도 | •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| 표준재무제표, 부가세과세표준증명,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|
| 반기 | •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•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| 부가세과세표준증명 |
| 분기 | •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•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|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|
| 월 | • 신청전월과 전전월 •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| (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, 신용카드 매출자료, 현금영수증 매출자료) |

□ 용자조건

- 대출한도 : 동일기업(개인, 법인) 당 최고 7천만원
-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 (분기별 변동금리)

- 금리우대는 유형별 0.1%p, 최대 0.3%p 지원되며,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

| 유형 | 구분 |
|-------|--|
| 정책 우대 | -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, 직접대출 성실상환, 제로페이 가맹점 |
| 정책 배려 | -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기업 |
| 사회안전망 | - 자영업자 고용보험, 전통시장 화재공제, 풍수해보험, 노란우산공제 |

- * (소진공 컨설팅)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
- ** (은행권 컨설팅) 신청일 기준 3년전 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(3시간 이상)수료일 이내
- *** (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)

| |
|---|
| ① (성실상환 기준)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 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|
| √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|
| √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,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|
| ② (제외대상) 사고기업, 자율상환제 대출계좌, 손실보상선지급 계좌, 완제된 계좌 |

- 대출기간 : 5년 (거치기간 2년 포함)

□ 자금코드명

| 자금명 | 자금코드 | 자금설명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일시적 경영애로 | TA | - 우대금리 미지원 |
| 일시적 경영애로_우대1 | TB | - 우대금리 0.1%p |
| 일시적 경영애로_우대2 | TC | - 우대금리 0.2%p |
| 일시적 경영애로_우대3 | TE | - 우대금리 0.3%p |

□ 준비서류

| 구분 | 준비 서류 |
|--------------|--|
| 공통 | ① 실명확인증표(운전면허증, 노인복지카드, 장애인복지카드, 여권 등)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 이내)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(최근 1개월 이내) -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: 보험자격득실확인서(개인별, 과거이력 포함)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-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: 건강보험 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또는 내역),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,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신제),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: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* 단,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, 카드(현금영수증)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* (지역경제위기우려)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“소상공인확인서”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(필요시*)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(최근 1년간) -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, 부가가치세신고서,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*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(필요시*)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- 사업장임대차계약서,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*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,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|
| 금리우대 (해당시) | ① 제로페이 가맹 확인(제로페이 가맹 현황 조회)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(유효기간 내)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(유효기간 내)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, 컨설팅 협약서(3년 이내)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(공제기간 내) ⑨ 소기업·소상공人公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(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) (월납 : 대출신청 전월까지, 분기납 : 전분기까지 납입) ⑩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(교육)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|
| 매출감소 확인 (필수) | ○ 국세청 매출 신고자료로 감소여부 판단 - (연매출 감소) 표준재무제표증명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- (반기 매출 감소)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- (분기·월 매출 감소)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(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, 신용카드 매출자료, 현금영수증 매출자료) |

2-2 청년고용연계자금(마감)

□ 지원대상 : 아래의 ① ~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

-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(만 39세 이하)
- ② 신청일 기준,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%이상 청년 근로자(만 39세 이하)를 고용중인 소상공인
- ③ 신청일 기준,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(만 39세 이하)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

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의 11호 (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)에 의거 **만 39세 이하인 자**

**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1호 (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) 에 의거 청년을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준용하여 판단

□ 용자조건

○ 대출한도 : 동일기업(개인, 법인) 당 최고 7천만원

○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

- 금리우대는 유형별 0.1%p, 최대 0.3%p 지원되며,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

| 유형 | 구분 |
|-------|--|
| 정책 우대 | -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, 직접대출 성실상환, 제로페이 가맹점 |
| 정책 배려 | -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|
| 사회안전망 | - 자영업자 고용보험, 전통시장 화재공제, 풍수해보험, 노란우산공제 |

* (소진공 컨설팅)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

** (은행권 컨설팅) 신청일 기준 3년전 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(3시간 이상)수료일 이내

*** (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)

① (성실상환 기준)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

✓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

✓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,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

② (제외대상) 사고기업, 자율상환제 대출계좌, 손실보상선지급 계좌, 완제된 계좌

○ 대출기간 : 5년 (거치기간 2년 포함)

□ 자금코드명

| 자금명 | 자금코드 | 자금설명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청년고용연계_변동 | YB | - 우대금리 미지원 |
| 청년고용연계_변동_우대1 | YC | - 우대금리 0.1%p |
| 청년고용연계_변동_우대2 | YD | - 우대금리 0.2%p |
| 청년고용연계_변동_우대3 | YF | - 우대금리 0.3%p |

□ 준비서류

| 구분 | 준비 서류 |
|---------------|--|
| 공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실명확인증표(운전면허증, 노인복지카드, 장애인복지카드, 여권 등)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 이내)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(최근 1개월 이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: 보험자격득실확인서(개인별, 과거이력 포함)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-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: 건강보험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또는 내역),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,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산재),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: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, 카드(현금영수증)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*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“소상공인확인서”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(필요시)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(최근 1년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, 부가가치세신고서,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*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(필요시)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장임대차계약서, 등기사항전부증명서 中 택1 *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|
| 추가 (해당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)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최근 1개월 이내) ② (24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)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<양식7> |
| 금리우대 (해당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(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)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(유효기간 내)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(유효기간 내)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, 컨설팅 협약서(3년 이내)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(공제기간 내) ⑨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(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) (월납 : 대출신청 전월까지, 분기납 : 전분기까지 납입) ⑩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(교육)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|

2-3 대환대출

□ 지원대상 : ①중·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보유한 대출 중 ④성실상환 중이면서 ⑤은행권·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만기 연장에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

- ①(중·저신용) 대표(이사)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
 - *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 기업인 경우,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
 - ** 확인서 발급일 기준 919점을 초과하는 경우 확인서 발급불가
- ②(소상공인)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
- ③(보유대출) ①'24.7.3. 이전 취급된 ②사업자대출 또는 ③사업용도 가계대출
 - ①('24.7.3. 이전 취급) '24.7.3. 이전 신규취급 및 '24.7월 이후 갱신 채무
 - ②(사업자대출) 신용·담보 무관, 사업자운전자금대출
 - ③(사업용도 가계대출) 신용·담보 무관,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 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*로 사용한 대출
 - * 원부자재 등 매입금액, 사업장(공장) 임차료, 종업원 급여로 지출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
- ④(성실상환) '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, 또는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'이 없는 경우
- ⑤(고금리 대출) 신청일 기준 은행·비은행권의 7% 이상 고금리 대출

| 구분 | 기관명 |
|------|--|
| 은행권 | 하나, 신한, 국민, 우리, SC제일, 한국씨티, 경남, 광주, 부산, 아이엠(舊. 대구), 전북, 제주, 농협, 수협, 기업, 산업, 수출입, 케이, 카카오, 토스 |
| 비은행권 | 저축은행, 여신금융전문회사, 상호금융(신협, 지역농협, 지역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, 보험사 |

- ⑥(만기연장 애로) 신청일 현재기준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대출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만기연장 등이 거절된 경우

| 구분 | 기관명 |
|-------------|--|
| 확인서 발급기관 | 하나, 신한, 국민, 우리, SC제일, 경남, 광주, 부산, 아이엠(舊. 대구), 전북, 제주, 농협, 수협, 기업, 산업 총 15곳 |

- (제한대상) 용자제외업종, 기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-|--|
| ① 세금체납 |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|
| ② 신용정보등록 | 한국신용정보원의 "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"에 따라 "신용도판단정보" 또는 "공공정보"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용도 판단정보: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(어음 거래정지처분 등)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 등 - 공공정보: 세금·과태료 체납, 채무불이행자 등재, 신용회복지원, 회생·개인회생·파산면책 결정, 산재·고용보험료·임금 체납,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|
| ③ 연체 |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현재 연체 중 2.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3.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|
| ④ 휴·폐업 |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|
| ⑤ 용자제외업종 | 「2024년 중소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」의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|
| ⑥ 기타 | 대환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|

* 제한대상 채무: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, 자금용도 등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

→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 등), 스타론, 전세대출, 상속세납부대출, 보험계약대출, 외화대출, 물적금융(리스 등), 한도대출(마이너스통장 등), 결제성대출(구매자금대출 등),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

□ 용자조건

○ 대출한도 : 동일기업(개인, 법인) 당 5천만원*

* 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원 이내 한도 적용

- (한도차감) '22년 대환대출(소진공), '22~'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(금융위, 신보)을 지원 받은 경우,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

*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(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)

** 기존대출의 용도(사업자 대출, 가계대출)에 따라 한도 차감

○ 대출금리 : 연 4.5% (고정금리)

○ 대출기간 : 10년 (거치기간 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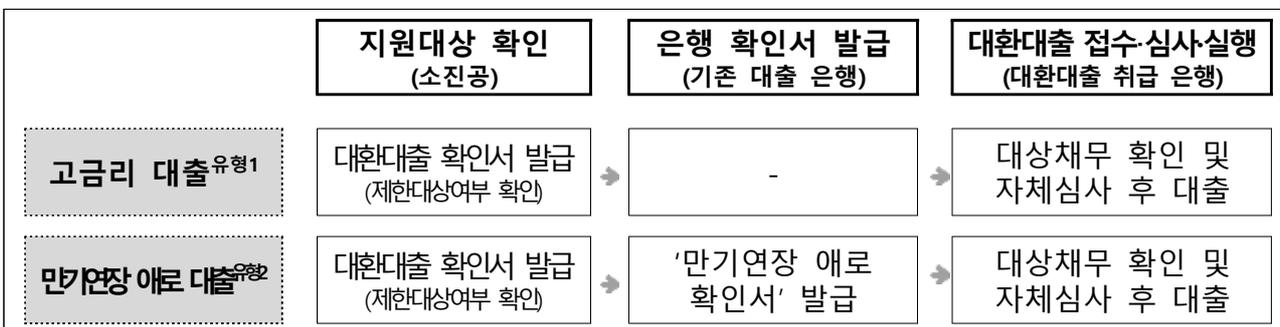
□ 자금코드명

| 자금명 | 자금코드 | 자금설명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환대출(유형1_사업자대출) | EX | - 은행.비은행권의 7% 이상 고금리 대출 |
| 대환대출(유형1_가계대출) | PX | |
| 대환대출(유형2_사업자대출) | EY | -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|
| 대환대출(유형2_가계대출) | PY | |

□ 진행절차

○ 용자방식 : 확인서(대환대출용) 발급 후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으로 대출을 금융기관(대리대출)을 통해 대환대출

< 대환대출 업무 절차 >



□ 준비서류

| 구분 | 준비 서류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|----|---|---------|---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|
| 공통 | <p>① 실명확인증표(운전면허증, 노인복지카드, 장애인복지카드, 여권 등)</p> <p>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 이내)</p> <p>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(최근 1개월 이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: 보험자격득실확인서(개인별, 과거이력 포함)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-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: 건강보험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또는 내역),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,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산재),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<p>④ 매출액 확인서류 :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, 카드(현금영수증)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*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“소상공인확인서”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<p>⑤ (필요시)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(최근 1년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, 부가가치세신고서,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*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<p>⑥ (필요시)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장임대차계약서,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*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| | | | | | | | | | |
| 금융기관 준비서류 | <p>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(대환대출용)</p> <p>② 금융기관 징구서류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06 1276 1444 1915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data-bbox="406 1276 1444 1321">금융기관 심사 시 징구서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406 1321 510 1489">공통</td> <td data-bbox="510 1321 1444 1489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분증 ■ 사업자등록증명 ■ 국세·지방세 납부증명 ■ 매출액확인서류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) ■ 금융거래확인서, 대출계좌조회표 등 ■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 요청서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06 1489 510 1624">추가 (법인)</td> <td data-bbox="510 1489 1444 1624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■ 표준재무제표증명(최근 3개년) ■ 정관, 이사회 의사록, 주주명부 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■ 법인인감증명서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06 1624 510 1713">유형2 (해당시)</td> <td data-bbox="510 1624 1444 1713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06 1713 510 1915">가계 대출 (해당시)</td> <td data-bbox="510 1713 1444 1915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[매입대금 증빙] 부가세신고서(사업장현황신고서) ■ [급여지급 증빙]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■ [임차료 증빙]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* 대출일이 속하는 반기부터 최대 3개 반기까지 대출금 사용 증빙 인정 (최대 1천만원)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</p> | 금융기관 심사 시 징구서류 | | 공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분증 ■ 사업자등록증명 ■ 국세·지방세 납부증명 ■ 매출액확인서류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) ■ 금융거래확인서, 대출계좌조회표 등 ■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 요청서 | 추가 (법인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■ 표준재무제표증명(최근 3개년) ■ 정관, 이사회 의사록, 주주명부 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■ 법인인감증명서 | 유형2 (해당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| 가계 대출 (해당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[매입대금 증빙] 부가세신고서(사업장현황신고서) ■ [급여지급 증빙]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■ [임차료 증빙]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* 대출일이 속하는 반기부터 최대 3개 반기까지 대출금 사용 증빙 인정 (최대 1천만원) |
| 금융기관 심사 시 징구서류 | | | | | | | | | | | |
| 공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분증 ■ 사업자등록증명 ■ 국세·지방세 납부증명 ■ 매출액확인서류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) ■ 금융거래확인서, 대출계좌조회표 등 ■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 요청서 | | | | | | | | | | |
| 추가 (법인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■ 표준재무제표증명(최근 3개년) ■ 정관, 이사회 의사록, 주주명부 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■ 법인인감증명서 | | | | | | | | | | |
| 유형2 (해당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| | | | | | | | | | |
| 가계 대출 (해당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[매입대금 증빙] 부가세신고서(사업장현황신고서) ■ [급여지급 증빙]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■ [임차료 증빙]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* 대출일이 속하는 반기부터 최대 3개 반기까지 대출금 사용 증빙 인정 (최대 1천만원) | | | | | | | | | | |

3. 성장기반자금 (소공인특화자금)(마감)

□ 지원대상 :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

□ 용자조건

○ 대출한도 : 동일기업당 (운전) 최고 1억원, (시설) 최고 5억원

○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 (분기별 변동금리)

- 금리우대는 유형별 0.1%p, 최대 0.3%p 지원되며,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

| 유형 | 구분 |
|-------|--|
| 정책 우대 | -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, 직접대출 성실상환, 제로페이 가맹점 |
| 정책 배려 | -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기업 |
| 사회안전망 | - 자영업자 고용보험, 전통시장 화재공제, 풍수해보험, 노란우산공제 |

* (소진공 컨설팅)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

** (은행권 컨설팅) 신청일 기준 3년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(3시간 이상)수료일 이내

*** (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)

① (성실상환 기준)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

✓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

✓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,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

② (제외대상) 사고기업, 자율상환제 대출계좌, 손실보상선지급 계좌, 완제된 계좌

○ 대출기간 : (운전) 5년 (거치기간 2년 포함), (시설) 8년 (거치기간 3년 포함)

□ 자금코드명

| 자금명 | 자금코드 | 자금설명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소공인특화자금_운전 | EA | - 우대금리 미지원 |
| 소공인특화자금_운전_우대1 | EB | - 우대금리 0.1%p |
| 소공인특화자금_운전_우대2 | EC | - 우대금리 0.2%p |
| 소공인특화자금_운전_우대3 | ED | - 우대금리 0.3%p |
| 소공인특화자금_시설 | QA | - 우대금리 미지원 |
| 소공인특화자금_시설_우대1 | QB | - 우대금리 0.1%p |
| 소공인특화자금_시설_우대2 | QC | - 우대금리 0.2%p |
| 소공인특화자금_시설_우대3 | QD | - 우대금리 0.3%p |

□ 준비서류

| 구분 | 준비 서류 |
|---------------|--|
| 공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실명확인증표(운전면허증, 노인복지카드, 장애인복지카드, 여권 등)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 이내)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(최근 1개월 이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: 보험자격득실확인서(개인별, 과거이력 포함)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-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: 건강보험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또는 내역),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,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산재),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,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: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,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*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“소상공인확인서”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(필요시)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(최근 1년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, 부가가치세신고서,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*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(필요시)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장임대차계약서, 등기사항전부증명서 中 택1 *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 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|
| 금리우대 (해당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제로페이 가맹 확인(제로페이 가맹 현황 조회)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(유효기간 내) ④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(유효기간 내)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, 컨설팅 협약서(3년 이내)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(공제기간 내) ⑨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(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) (월납 : 대출신청 전월까지, 분기납 : 전분기까지 납입) ⑩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(교육)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|

붙임1.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| 표준산업분류 | 업종 |
|----------------|---|
| 33409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|
| 46102 중 | 담배 중개업 |
| 46209 중 | 잎담배 도매업 |
| 46333 | 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 |
| 46463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|
| 47640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|
| 47811 중 | 약국, 한약국 |
| 47859 중 | 성인용품 판매점 |
| 47911, 47912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|
| 47993 중 |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|
| 52991 중 | 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 등) |
| 56211 | 일반유희주점업 |
| 56212 | 무도유희주점업 |
| 5821 중 |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 |
| 63999 중 |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|
| 64 | 금융업 |
| 65 | 보험 및 연금업 |
| 66 |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|
| 68 | 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|
| 76390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|
| 711, 712 | 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|
| 731 | 수의업 |
| 73904 중 | 감정평가업 |
| 75330 | 흥신소 |
| 75993 |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|
| 75999 중 |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|
| 86 | 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|
| 91113 |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|
| 91121 | 골프장 운영업 |

| 표준산업분류 | 업종 |
|---------|--|
| 9122 중 |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 |
| 91249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|
| 91291 | 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 |
| 9612 중 |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|
| 96992 |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 |
| 96999 중 |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 |
| 기타 |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 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|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익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/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용자 허용 업종 >

| 재해피해 소상공인 | 용자 허용 업종 |
|-----------|--|
| 공통 |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 |
| 관광특구지역 소재 |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 |
| 특별재난지역 소재 |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익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 |

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/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

- *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
☞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- * 기타 :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

붙임2. 지역경제 위기지역 대상 확인

지역경제 위기지역 대상 확인

① 고용위기지역(고용노동부 지정)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(산업통상자원부 지정)

| 구 분 | 지 역 |
|------------|-----|
| 고용위기지역 | - |
|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| - |

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(중소벤처기업부 지정)

| 시도 | 시·군·구 | 지정산업단지 | 지정기간 |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강원 | 동해시 | 북평국가, 북평일반 | '20.02.27 ~ '25.02.26 | |
| 전북 | 김제시 | 김제지평선일반 | | |
| | 정읍시 | 정읍첨단 | | |
| 전남 | 나주시 | 나주일반, 나주혁신 | | |
| | 함평군 | 동함평일반 | | |
| | 장흥군 | 장흥바이오식품 | | |
| | 강진군 | 강진환경일반 | | |
| 광양시 | 광양만세풍일반 | | | |
| 부산 | 금정구 | 금사공업 | | '23.01.26 ~ '25.01.25 |
| 경북 포항시 | 남구 | 포항철강1,2,3,4일반 대송면 제내리 | | |
| 전남 | 담양군 | 담양일반 | '23.03.21 ~ '25.03.20 | |
| | 영광군 | 대마전기자동차 | | |
| 광주 | 광산구 | 하남,진곡,평동1,2,3차일반 | '23.11.21 ~ '25.11.20 | |

* 인·접·동 상위 시·군·구 : 매출감소 확인, 지정산업단지 : 매출감소 미확인

**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확인서류 : 산업단지 입주확인서(한국산업단지공단)

③ 상권활성화구역·자율상권구역(관할 지자체 지정)

| 연번 | 시도 | 시군구 | 상권구역 | 사업기간 |
|----|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 | 서울 | 관악구 | 별빛신사리상권 | '20.4.1~'25.3.31 |
| 2 | 강원 | 정선군 | 정선아리랑상권 | '20.4.1~'25.3.31 |
| 3 | 충남 | 공주시 | 공주시산성상권 | '20.4.1~'25.3.31 |

| 연번 | 시도 | 시군구 | 상권구역 | 사업기간 |
|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4 | 전북 | 군산시 | 군산시구도심상권 | '20.4.1~'25.3.31 |
| 5 | 부산 | 연제구 | 연제오방상권 | '20.4.1~'25.3.31 |
| 6 | 서울 | 동작구 | 동작구LINK상권 | '20.12.1~'25.11.30 |
| 7 | 경기 | 양평군 | 양평물맑은상권 | '20.12.1~'25.11.30 |
| 8 | 강원 | 춘천시 | 춘천원도심상권 | '20.12.1~'25.11.30 |
| 9 | 충북 | 제천시 | 제천시원도심상권 | '20.12.1~'25.11.30 |
| 10 | 전남 | 진도군 | 진도군남문로상권 | '20.12.1~'25.11.30 |
| 11 | 전북 | 부안군 | 부안마실상권 | '20.12.1~'25.11.30 |
| 12 | 경북 | 문경시 | 문경시점촌원도심상권 | '20.12.1~'25.11.30 |
| 13 | 경남 창원시 | 진해구 | 진해군항상권 | '20.12.1~'25.11.30 |
| 14 | 인천 | 중구 | 개항희망문화상권 | '22.1.1~'26.12.31 |
| 15 | 인천 | 부평구 | 부평원도심상권 | '22.1.1~'26.12.31 |
| 16 | 광주 | 동구 | 광주충장상권 | '22.1.1~'26.12.31 |
| 17 | 광주 | 광산구 | 광주송정역세권상권 | '22.1.1~'26.12.31 |
| 18 | 전북 | 익산시 | 익산다e로움상권 | '22.1.1~'26.12.31 |
| 19 | 경북 | 경주시 | 경주시중심상권활성화구역 | '22.1.1~'26.12.31 |
| 20 | 경북 | 안동시 | 안동원도심상권 | '22.1.1~'26.12.31 |
| 21 | 경남 | 밀양시 | 밀양원도심햇살문화상권 | '22.1.1~'26.12.31 |
| 22 | 부산 | 사하구 | 온택트괴정스마트상권 | '22.1.1~'24.12.31 |
| 23 | 대구 | 달서구 | 두류젊코상권 | '23.1.1~'27.12.31 |
| 24 | 경남 | 함양군 | 함양한들상권(지역상권구역) | '23.1.1~'27.12.31 |
| 25 | 전북 | 정읍시 | 샘고을정다운상권 | '23.1.1~'27.12.31 |
| 26 | 충북 | 충주시 | 충주원도심상권 | '23.1.1~'27.12.31 |
| 27 | 충북 | 보은군 | 결초보은활력상권 | '23.1.1~'27.12.31 |

* 인·접·동 상위 시·군·구 : 매출감소 확인, 상권구역 : 매출감소 미확인

** 상권구역 확인 방법 :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(별도 안내)

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(정부 지정)

- 해당 지역 없음

정책자금 상환방법

□ 정기상환

-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%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%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

【 정기상환 예 】

- 2,000만원 융자시 (이자 2.27%)
 - ① 거치기간 2년동안 1분기(3개월)마다
 - 이자 113,500원 납부
 - ② 거치기간 종료후 3년째부터 3년간 1분기(3개월)마다
 - 원금 1,166,660원(원금의 70% 14,000,000원을 3년으로 분할)
 - 이자는 원금 상환에 따라 분기별 변동
 - ③ 대출종료일 마지막 원금납부일
 - 원금의 30% 6,000,000원
 - 원금의 70% 중 마지막 납입금 1,166,660원
 - 이자

□ 조기상환

- (조기상환) 약정기간 내에 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대출은행에 신청하여 상환
 - *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 - 총 5년을 기한으로 납입했던 **보증수수료**는 중도상환 시 해당 일수를 계산하여 **환급**(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)
 - 조기상환 후 대여자액 기준으로 분할상환원금이 재조정되지 않고, 차기 분할상환원금에 대해 선납 처리

【 조기상환 예 】

◦ 2,000만원 융자시 (이자 2.27% 기준)

① 거치기간 종료후 매 3개월 마다 분할상환 원금 1,166,660원 납부 중

② 2020-06-15, 2,000,000원을 조기상환할 경우,

- 이자: 조기상환금액 * 이자일수/365(윤년일 경우 366일) * 금리

ex. 2,000,000원 * 55일/365일 * 2.27% = 6,841원

③ 조기상환 후 정기상환 금액 산정 방법

| 상환일자 | 상환구분 | 상환스케줄상 상환원금 | 상환예정원금 | 상환예정이자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2020-07-20 | 정기상환 | 1,166,000원 | 회수완료 | 대여잔액에 대한 이자 납부 |
| 2020-10-20 | 정기상환 | 1,166,000원 | 332,000원 | |
| 2021-01-20 | 정기상환 | 1,166,000원 | 1,166,000원 | |
| ⋮ | ⋮ | ⋮ | ⋮ | |

- 2020-07-20 분할상환원금은 선납 처리

- 2020-10-20 분할상환원금은 332,000원 납부(834,000원은 선납 처리)

- 2021-01-20 분할상환원금부터 1,166,660원 정상납부